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306호

「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」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25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」

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산정에 관해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의 세부 산정 방식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(어진동,
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)

- 전자우편 : ikhee54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5910

3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(전화 (044) 201 - 4924, 팩스 044-201-591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